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690

발의연월일: 2021. 12. 3.

발 의 자:조경태・박완수・이채익

지성호 · 홍문표 · 태영호

김용판 · 조명희 · 하영제

백종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.

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'준수하다'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'지키다'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3항 중 "준수하여야"를 "지켜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학습자) ①・② (생 략)	제12조(학습자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	③
의식을 확립하고, 학교의 규칙	
을 <u>준수하여야</u> 하며, 교원의 교	<u>지켜야</u>
육 •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	
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	
는 아니 된다.	